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19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차규근・이해민・조 국

신장식 · 김준형 · 서왕진

김재원 • 박은정 • 정춘생

황운하 · 김선민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1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1 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 융투자소득(이하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

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 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결 손금 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1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① 거주
	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
	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소
	득(이하 "장기보유주식등 양도
	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장기보유주식등 양도
	소득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금액이 금융
	투자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
	<u>로 한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u>야 한다.</u>
	③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6(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 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야 한다.